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변경 안내

<안전관리팀 2026. 10. 27.>

□ **관련: 「방사선 안전관리 규정」**(이하 '규정'이라 한다)*개정 시행: 2026. 11. 1.

□ **규정 주요골자** (기존 대비 변경사항)

· **방사선연구책임자의 지정 의무 규정**	(제4조, 제6조, 제28조 등)
· **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무 부여**	(제4조, 제6조 등)
· **구매 및 폐기 등 절차의 준수**	(제9조, 제12조 등)
· 피폭/검진 이상자 조치방안 마련	(제17조, 제18조 등)
· 기록물 관리 및 행정체계 재정립 등	(제26조 및 [별표1], [별표3] 등)

□ **주요 업무체계 안내**

○ 방사선연구책임자 지정: 매 학기 또는 신규 구축 시

(예비)방사선연구책임자	▶	안전관리자	▶	
· 지정서 제출 · (신규 구축 등 필요시) 공간마련/장비·물질 준비		· (필요시) 원안위 승인 · 책임자 지정 보고(내부)		종사 가능

○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('허가' 대상에 한함)

방사선연구책임자	▶	신규종사자	▶	안전관리자	▶	
· 등록 신청서 제출		· 안전교육/ 건강진단 완료		· 개인선량계 지급 및 종사 승인		종사 가능

○ 구매, 폐기 의뢰

방사선연구책임자	▶	안전관리자	▶	방사선연구책임자	▶	
· 구매/폐기 검토 요청→안전관리자 (각 서식 작성)		· 검토/승인 · (필요시) 원안위 승인		· 구매/폐기 의뢰 (업체 또는 기관) ※안전관리자 협조		구매/폐기 완료

○ 그 밖의 취급 및 안전관리 기준: 「원자력안전법」 및 규정 등에 따름

○ 주요서식: https://safety.ulsan.ac.kr(방사선안전관리>**서식자료**)